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3 발의연월일: 2021. 6. 1.

발 의 자:김성주·강선우·김민기

김윤덕 • 서영석 • 송갑석

송재호 · 오영환 · 이형석

정필모 · 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편슈머(Funsumer)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음.

편슈머는 식품업계에서도 하나의 추세로 자리매김해 식품과 관련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해 시장에 출시되며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편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 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 법률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품등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 는 표시 또는 광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
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위의 금지) ①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식품등이 아닌 상호, 상표, 용
	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을 사용하여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u>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
	<u> 고</u>
<u>9</u> . (생 략)	<u>10</u> . (현행 제9호와 같음)